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09

발의연월일: 2025. 5. 27.

발 의 자: 박수현·서삼석·이정문

박용갑 • 이개호 • 김윤덕

주철현 · 김종민 · 이건태

조계원 · 조인철 · 양부남

김재원 • 박지혜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연구·수립·추진과 법령 정비를 통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장애예술인 예술시장 생태계 구축 및 전국화 추진을 담당하는 부서가 필요한 실정이나부서 신설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담 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문화예술 지원 제도 및 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전담부서의 설치·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예술 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3조의2(전담부서의 설치・운
	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